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외공관”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의 재외공관”으로 한다.

제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족수당”으로 한다.

12. 별표 9 제2호 다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같은 호 가목, 나목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 가목의 수당

제21조의3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를 “제15조”로,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를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2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에 포함한다.

별표 4의 제목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
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
9조 관련)”를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1. 기술 정보 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0. 3. 10.>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급·7급: 월 10,000원 이하 (2)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50,000원
	다. 보건직렬(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의료기술직렬, 의무	1) 지급상한액: 월 5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진료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간호조무직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직렬별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무 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	(지급액)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비고)

	는 제외한다)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지급액)

	에 대한 보전수당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삭제 <2020. 3. 10.>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table><tr><td colspan="2">(가) 지급액</td></tr><tr><td>지급대상</td><td>월지급액</td></tr><tr><td>1급</td><td>400,000원</td></tr><tr><td>2급</td><td>300,000원</td></tr></table>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400,000원									
2급	300,000원									

직위 수 당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200,000원		
		4급	100,000원		
		5급 이하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 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 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및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교류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 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 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 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 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 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삭제 <2020. 3. 10.>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차.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정원의 15퍼센트 범위 내)	1) 지급액: 월 10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한다.
12.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급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u>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u>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의 재외공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⑧ (생략)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고등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
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
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
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
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
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
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
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
비를 말한다.

이 정한다.

<삭 제>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
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
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
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
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
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
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
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
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
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
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생 략)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

⑫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제15조 -----

----- 비례하여 -----
-----.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제3조 및 제1

<u>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사무를</u>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u>-----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